

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

제정 2012. 4.17. 문화재청 예규 제109호
일부개정 2015. 3.27. 문화재청 예규 제146호
일부개정 2016. 3.23. 문화재청 예규 제16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 및 「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」에 따른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(이하 “인류무형유산”이라 한다)의 등재신청 대상 문화재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“국가목록”이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중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.

1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
2.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시·도무형문화재
3. 제2항에 따른 예비목록

② 이 규정에서 “예비목록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무형문화재 목록을 말한다.

제3조(예비목록의 조사)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재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무형문화재의 명칭

2. 해당 무형문화재의 범주
3. 해당 무형문화재의 개념 및 정의
4.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공동체 및 그 범위
5.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여건 및 실연방식
6. 해당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기능 및 그 관계
7.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호조치 방안

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, 집단, 공동체,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비목록의 선정) ① 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,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(이하 “무형문화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,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제5조(국가목록의 공표 등)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)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「문화재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.

② 문화재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, 집단, 공동체 또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(문화재청 예규 제109호, 2012.4.1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문화재청 예규 제146호, 2015.3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문화재청 예규 161호, 2016.3.23.)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